저장 : 정유진 / 국제교육협력담당관 (2020-01-22 10:40:19)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 육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사 파견 근무 협조 요청

- 1.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 제9호
-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국제 교육협력 업무를 수행할 파견교사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시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교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사 파견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위원장 국제교육협력 전결 2020.1.22. 교육연구사 정유진 행정사무관 **안희정** 담당관 **최수진**

협조자

수신자

시행 국제교육협력담당관-287 (2020. 1. 22.)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동) / www.moe.go.kr

亚

전화번호 044-203-6783 팩스번호 044-203-6788 / eugene2408@korea.kr / 대국민 공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사 파견 안내

□ 파견 개요

- 근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제1항 제9호
- 파견대상 및 자격
 - 경력 5년 이상 초·중등 교사
 - 유네스코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사람
 - ※ 영어능력 우수자 우대
- **파견기간** : 1년 (1년 연장 가능)
- **파견기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서울 중구 명동 소재)
 - ※ 기관 설립근거 : 유네스코 헌장 제7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제7조 기관 성격 : 공직유관단체
- 담당 예정 업무
 -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한국 교육 현장 유네스코 이념 확산 활동
 - 교육개발협력사업 운영,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정책연구 추진
 - 국제회의 의제분석 및 참가

□ 선발 절차

- 추천방법
 -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선발 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원서(붙임2) 전자문서 발송
 - 추천인원 : 교육청별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1명

○ 선발과정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인터뷰 실시 후 최종 파견 근무자 선발
- 파견 근무자 선발 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해당 원소속기관에 파견 요청 공문 시행

※ 선발 일정 및 근무 시작일은 위원회 및 추천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문의

- 이메일: recruit@unesco.or.kr

- 전화: 02-6958-4123

□ 기대 효과

- 한국 교육 현장의 국제교육 아젠다 달성에 기여
 -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교육정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의 파견근무를 통해 국내 유네스코활동 활성화
 -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4(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달성에 기여
- 교사의 국제업무 역량 강화
 -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네스코 관련 국내외 업무 수행으로 파견 교사의 국제 업무역량 강화
 - 파견 교사의 학교 현장 복귀 후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국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파견 근무자 후기

이〇〇 (사립 고등학교 교사)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와 유네스코의 철학 및 유네스코 이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와 방향에 대해 업무를 통해 공부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복귀해서는 유네스코학교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이념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인성교육과 접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해 전학교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〇〇 (교육청 일반행정직8급)

원 소속기관에서는 다룰 수 없는 다른 분야의 일, 특히 개발협력분야 업무 경험을 익힐 수 있어서 앞으로 교육청의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맡게 된다면 경험을 살려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위원회의 유연근무 제도는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뒷받침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OO (교육청 일반행정직8급)

학교, 지역, 국가를 넘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 등 거시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을 교육, 과학, 문화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조직으로 저에게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 안목을 키워주었습니다.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치나이념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해주고, 교육에 있어서 학문적 논의나 이슈들을 다툼으로써 미래 교육이 그려나갈 비전과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 문화, 과학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특히세련되고 효과적인 방식의 소통방식에 대해 경험하였습니다.

정00 (교육청 일반행정직7급)

국제적인 행사의 참여 및 진행으로 글로벌 감각을 높이고, 두려움을 깨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업무관련 해외 출장의 경험으로,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 및 교육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외국계기업처럼 구글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점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붙임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요 및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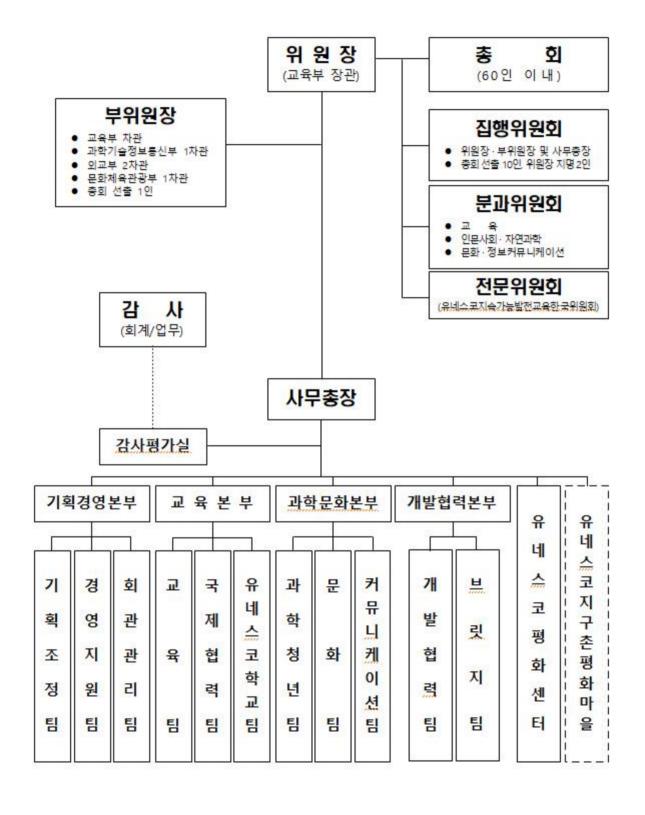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요

- (목적)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7조, '54.1.)
 -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26 유네스코회관
 - * 설치근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 (기능 및 역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8조
 -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 ·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 ·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 사업
 - ·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성)

- · 위원장 : 교육부장관(당연직)
- · 부위원장 5인(당연직 4인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 관광부 차관, 선출직 1인)
- · 위원(60인 이내): 당연직 위원 6인, 기관·단체 선임대표자 20인 이내, 전문가 20인 이내, 국회의원 6인 이내,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4인, 지방자기단체 공무원 4인
- · 사무처 : 사무총장과 직원 약 80명

□ 조직도



□ 비전(사업목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비전2020 (2014-2020)

임무(사명)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Promoting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비전 2020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배움으로 꿈을 이루는 지구촌

Building peace with the people of Korea, Sharing dreams with the world through education

핵심가치

소통(Communication), 협력(Cooperation), 기여(Contribution)

전략목표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한국의 SDGs 달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선도

II.국내 SDG4-

저개발국 교육 역량 강화 기여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강화

전략과제

l.한국의 유네스코 정책 참여 강화 교육 2030 의제 선도 III.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과학협력 증진 IV.문화유산의 보호와 문화다양성

증진

V.저개발국 교육 기초역량 강화 지원 VI.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

붙임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사 파견 지원서

- ※ 시도교육청에서 전자문서로 발송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항목 기재
- ※ 지원서 양식 중 '기울임'으로 쓰여진 부분은 기재요령이므로 삭제 후 해당사항 기입
- ※ 지원서 양식의 변형은 불가. 단, 개인별 기재사항의 양에 따라 각 표의 칸을 증감하여 작성

I. 기본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 |
|--------|------|-----|--|
| 소속 | 직 급 | 연락처 | |
| E-mail | | | |

Ⅱ. 희망 부서 및 업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직 및 사업 참고(https://www.unesco.or.kr/introduce/unesco_intro/)

| 순위 | 희망 부서 | 희망 업무 | 비고(관련 경험 및 지식) |
|-----|-------|-------|----------------|
| 1순위 | | | |
| 2순위 | | | |
| 3순위 | | | |

Ⅲ. 학력 및 자격

II-1. 정규학력사항

| 입학 및 졸업년월 | 학 교 명 | 전 공 (복수전공, 부전공 기재) | 학위 |
|-------------|--------|-----------------------|--------|
| yy.mm-yy.mm | **고등학교 | | |
| yy.mm-yy.mm | **대학교 | **학과 | **학 학사 |
| yy.mm-yy.mm | **대학원 | ** 5]- | |

II-2. 외국어(선택)

| 언어 | 상 | 중 | 하 |
|-------|---|---|---|
| 영어 | | | |
| 중국어 | | | |
| 기타() | | | |

II-3. 자격증(외국어능력검증시험 포함)

| 자격증/시험(점수) | 취득일 | |
|------------|-------|--|
| | 년 월 일 | |
| | | |
| | | |

IV. 근무경력사항

| 년.월.일 | 소 속 | 직 책 | 직 무 | 비고 |
|-------------------|-----|-----|-----|----|
| yy.mm.dd-yy.dd.mm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붙임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근거법령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약칭: 유네스코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1. 유네스코
 -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 가위원회
 -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 단체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①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 · 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 교육부차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
 -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③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 제14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事) 2인을 둔다.
 - ②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⑧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⑨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⑩감사(監査)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총회) 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 2.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 6.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 · 의결에 부치는 사항
 - 7. 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집행위원회) ①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 2.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 ③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 ⑤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다.
- ⑥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0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실비의 지급) 위원·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다.
 -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 제24조(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